



국토교통부

보도해명자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
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배포 일시	2022. 12. 2.(금)		
담당 부서	물류정책관	책임자	과 장 박진홍 (044-201-4016)
	물류산업과	담당자	사무관 김용선 (044-201-4017)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우리나라와 같은 형태의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없습니다.

◆ (12.1, JTBC) [팩트체크] 파업 쟁점 '안전운임제' 시행하는 나라 없다?

- 호주, 캐나다는 일부 지역에서 법을 통해 최저운임제를 규정
- 브라질은 2018년부터 전국에서 시행하고 지키지 않으며 처벌

□ OECD 국가 중 정부 차원에서 최저운송료를 규정하고, 위반 시 처벌까지 하는 곳은 없습니다

- 먼저, 호주는 전국 단위의 안전운임제를 2016년에 2주간 운영 후 폐지한 바 있으며, 유사한 제도로 볼 수 있는 뉴사우스웨일즈주의 경우 위반 시 우리나라와 달리 화주를 처벌하는 대신 노사관계위원회 중재를 통해 해결하고 있으며,
- 캐나다의 경우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밴쿠버항을 출입하는 컨테이너 차량에 대해서만 화물차주의 최저 운송료를 규정하고 있으며, 화물차주와 직접적 계약 당사자가 아닌 화주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.
- 브라질은 이윤을 제외한 최저 운송원가만을 규정하고, 이윤은 계약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, 화물차주의 이윤까지 포함해 적정운임을 규정하는 우리나라 안전운임제와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.
- 한편, 프랑스, 일본은 강제성 없는 참고 운임제 형태로 운영 중입니다.